

양 천 구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위탁 절차 소홀 및 미이행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사무 및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공개모집 이외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그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을 신규로 진행할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수립·시행」 (기획예산과-6028, '22. 5. 7.)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②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 ③ 구의회 동의 → ④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⑤ 위·수탁 협약 체결
또한 제8조, 제24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

천구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2022년 ■■■■■■■■■■센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성과평가 및 재위탁을 하면서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하지 않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하지 않았으며,

2022년 ~ 2023년 양천구 ▲▲▲▲▲▲▲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의회 동의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민간위탁 절차를 미이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